

## 2 직위해제

### 가. 직위해제

#### 1) 관련 규정

가) 직위해제(「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1)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나)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라) 금품비위, 성범죄 등 다음 각 목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③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⑥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 기소 : 기소라 함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이다. 이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 약식명령 : 지방법원이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통상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이라는 재판에 의하여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처할 수 있는 간이한 절차를 말한다. 약식명령의 청구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죄 및 선택형으로서 벌금이 정해져 있는 죄에 대하여만 할 수 있으며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을 해야 한다.

(2) (1)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임용권자는 (1)의 (가)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4)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3)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1)의 (가)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나)호부터 (라)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나)호부터 (라)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